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8월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한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김 강

한국과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2019년 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김 강

# 한국과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한 비교연구

지도교수 김 석 민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김 강

# 김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전의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심재희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석민 (인)

201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목 차례>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
<b>제2장 한국과 중국의 상사중재제도</b> .....	3
제1절 중재관련 규범 .....	3
1. 중재관련 국제협약과 규칙 .....	3
2. 한국의 중재규범 .....	7
3. 중국의 중재규범 .....	13
제2절 중재기관 .....	16
1. 한국의 중재기관 .....	16
2. 중국의 중재기관 .....	19
제3절 중재절차 .....	23
1. 한국의 중재절차 .....	23
2. 중국의 중재절차 .....	30
<b>제3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b> .....	37
제1절 중재판정의 개념과 적용법률 .....	37
1. 중재판정의 의의와 유형 .....	37
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적용법률 .....	40

제2절 외국중재판정의 범위 .....	42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	42
2. 한국의 외국중재판정 범위 .....	43
3.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범위 .....	43
제3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	44
1. 행위능력의 결여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	44
2. 방어권의 침해 .....	46
3.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 또는 중재합의의 범위 이탈 .....	47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절차상의 하자 .....	48
5.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정지 .....	50
6. 중재가능성의 결여와 공서양속 위반 .....	52
<b>제4장 외국중재판정 승인과 집행 거부 사례 .....</b>	<b>55</b>
제1절 한국의 사례 분석 .....	55
1. 중재합의의 무효 .....	55
2. 방어권의 침해 .....	56
3.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 또는 중재합의의 범위 이탈 .....	57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절차상의 하자 .....	57
5.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취소 .....	59
6. 중재가능성의 결여 .....	60
7. 공서양속 위반 .....	60
제2절 중국의 사례 분석 .....	62
1. 중재합의의 무효 .....	62
2. 방어권의 침해 .....	62

3. 중재합의의 범위 이탈 .....	63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절차상의 하자 .....	64
5.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취소 .....	65
6. 중재가능성의 결여 .....	66
7. 공서양속 위반 .....	66
제3절 소결 .....	67
1. 한국의 판례 .....	67
2. 중국의 판례 .....	69
제5장 결 론 .....	71
《참고문헌》 .....	73

## 【표 목 차】

<표 2-1>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처리 현황(2016년) .....	19
<표 2-2> CIETAC 분쟁처리 현황(2000-2018) .....	22

## 【그림 목차】

<그림 2-1>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절차 .....	24
<그림 2-2> 중국 CIETAC의 중재절차 .....	31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Korea and China

Jin, Kang

Advisor : Prof. Kim, Seog-min,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ince China-Korea trade form converted from Indirect Trade to Direct Trade in August 1992 , the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has increased at top speed. Korea has become China's NO 1 trade partner.

Cases in both countries applying the New York Convention needs to be considered how it interprets and applies the reasons for denial of enforcement.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know how easy it is to approve and enforce foreign arbitrators in both countries, and in which case it can be denied enforcement. In practice, it will be possible to prepare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by considering the tendency of cases. In this sens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by presenting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s in both countries regarding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describes research background, objectives and methods. The second chapter compares and analyzes the arbitration laws,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tion status between Korea and China after considering international norms on arbitration. The third chapter systematically analyzes the reasons for rejection and approval of foreign arbitrator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nd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China after reviewing the basic concepts and scope of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e fourth chapter is based on rejection and the approval of the foreign arbitrator of the third chapter. After analyzing the precedents of courts in Korea and China by types, it presents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fifth chapter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nd present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task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계약)로 사법(私法)상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 제도로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sup>1)</sup> 중재는 국내·외 중재관계법규 및 국제협약의 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민사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편, 중재판정을 하더라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중재제도의 효율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중재제도의 존재 의의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성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공통적 규정 마련을 위한 국제 협약들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58년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58;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이다.<sup>2)</sup>

한국과 중국 간의 민상사 분쟁에 있어 양국이 모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국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든 중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한국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든 모두 뉴욕협약에 적용된다.<sup>3)</sup>

뉴욕협약을 적용하는 양국에서 판례는 과연 집행거부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양국가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이 얼마나 용이한지 그리고 어느 경우에 집행이 거부되는지 알

1) 김석민 (2018), 「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두남, p.69.

2) 이정 (2015),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3) 쉰쇼령(2013),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pp.489-521

수 있고 실무에서는 판례의 경향을 참작하여 승인 및 집행실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양국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제상사중재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은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뉴욕협약 규정, 한국과 중국 중재법, 중국 민사소송법에 관한 저서, 국내외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들을 주로 참조하였다. 또한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국의 외국상사중재판정 거부사례들을 제시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은 연구 배경, 목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재관련 국제규범을 고찰한 후, 한국과 중국의 중재관련법규, 중재기관 및 중재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기본 개념과 적용범위를 고찰한 후, 뉴욕협약과 한국과 중국의 중재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에 기초하여 한국과 중국의 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상사중재제도

### 제1절 중재관련 규범

#### 1. 중재관련 국제협약과 규칙

##### 가. 중재관련 국제협약

###### (1)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

베르사이유협정(the Treaty of Versailles)에 의하여 1919년에 창설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은 그 주목적이 국가간의 관계증진이었으므로 국제사법적인 업무는 두 가지만 하였는데, 하나는 교환수단에 관한 법이었고, 다른 하나가 중재법이었다.<sup>4)</sup>

먼저 1923년에 제네바의정서가 체결되었는바,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계약국에 속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국으로 하여금 현재 및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계약의 유효성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sup>5)</sup> 또한 분쟁대상계약은 계약국법아래에서 상사적(商事的)이어야 하며, 또한 계약국은 그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침묵함으로써 집행국의 입법에 맡겨졌다.

제네바의정서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인식되자, 국제연맹은 1927년 그 보완책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협약’(The 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27)<sup>6)</sup>을 만들어 제네바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중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판정과 계약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모든 계약국내에서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중재판정집행신청인이 행할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였다.<sup>7)</sup>

######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4) René David (1985),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cations, p.143.

5) 목영준(2005),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P19.

6) 92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302.

7) 목영준(2005),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P19.

제네바협약은 주로 유럽국가들 간의 협약일 뿐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다양한 국제상거래를 규율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주도로 초안이 만들어져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심의를 거쳐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이 만들어졌다.<sup>8)</sup>

뉴욕협약의 특징은 제네바의정서와 달리 분쟁당사자의 국적을 문제 삼지 않고 중재판정의 국적만을 중시하였고, 제네바협약과 달리 중재집행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는데 있다. 다만 뉴욕협약은 상호주의 및 상사유보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중 후자에 대하여는 국내법이 개입될 여지를 두었다는 비판이 있었다.<sup>9)</sup>

### (3) 유럽협약

국제연합의 유럽경제위원회(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는 西歐 및 東歐국가간 국제상거래를 규율하는 중재협약을 만들고자 1961년에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1961)을 만들었다.<sup>10)</sup> 이 협약 제1조 a항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상주하는(their habitual place of residence or their seat) 개인 또는 법인간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한다.”고 규정하여 계약당사자의 주소 또는 국적을 중시하였고, 상사분쟁에 한한다는 제한 또는 유보를 못하게 하였다.

### (4) 워싱턴협약

1950년 이후 세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양분화 되면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자본이 필요하였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투자자들은 그 자본회수에 관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sup>11)</sup>이

8) [www.concmm.net](http://www.concmm.net)

9) René David (1985),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cations, p.149.

10) 목영준(2005),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p.20.

에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주도로 ‘국가와 타방 국민간의 투자 분쟁해결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즉 워싱턴협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설치하였다.

협약에 의하면 계약국은 그 계약을 부인할 수 없고 중재합의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없으며 당사자인 국가는 중재판정을 재심사할 수 없다. 또한 중재판정은 당사자인 국가에서는 물론 다른 계약국내에서도 집행될 수 있다.<sup>12)</sup>

## 나. 중재관련 국제규칙

### (1)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범법안(UNCITRAL Model Law, 1985)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각국의 중재법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1985년 6월 21일 모범법안(UNCITRAL Model Law)을 채택하였다. 이후 2006년 UNCITRAL 모범법안<sup>13)</sup>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은 중재합의의 성립에 필요한 서면성의 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였다.<sup>14)</sup> 이는 실제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점과 국제중재의 효과는 종종 임시적 처분의 집행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필요성 등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2)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표준적인 중재규칙으로서 1976년 중재규칙을 만들었고, 1980년 이를 보완하였다.

UNCITRAL에서는 2006년 모범법안 개정작업을 마친 후 곧이어 실무작업반을

11) 목영준(2005),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p.20.

12) 목영준(2005),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p.20.

13) ‘모델중재법’으로도 번역된다.

14) 노태약 (2010),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국제사법학회, p.112.

통하여 중재규칙의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1976년 채택된 기존 중재규칙이 국제 중재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중재규칙의 조문이나 정신의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재의 중재실무를 유연하게 반영할 것을 주된 목표로 정한 후 2006년 9월 제45차 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10년 6월 21일 제43차 UNCITRAL 본회의 중재분야 전원위원회에서 중재규칙의 개정을 완성하고 이를 채택하기에까지 이르렀다.<sup>15)</sup>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판정부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 운영을 위하여 여러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둘째, 서면성 완화와 같이 UNCITRAL 모델중재법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UNCITRAL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관련 협약 문서에서 새로운 통신수단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한 내용들도 볼 수 있다. 셋째,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기존 규정의 제목을 변경하고 본문 내용을 간결함으로써 명확성을 추구하고 선정방식, 중재인의 수, 중재인 선정기관의 관여 등 서로 관련된 규정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문을 재배열하고, 이때, 규정을 재배치함으로써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있다. 넷째, 모델중재법과 가능한 일관되도록 규정하고 특히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사전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정된 모델중재법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 (3) ICC 중재규칙(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1988)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한 통일화 운동을 주도하여 뉴욕협약 등을 성립시킨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도 1988년 ICC 중재규칙(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을 채택하였다. 1998년 개정에 이어 개정규칙은 2012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주요 개정 목표 및 내용으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건 관리 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조기 개최를 의무화하였다는 점, 명확성 제고를 위해 비밀유지 명령(confidentiality order)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리 종결시 중재판정 예정일을 고지하도록 하였다는 점, 최근의 실무상 요구를 반영하여 임시적 처분을 위한 긴급 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제도<sup>16)</sup>를 신설하고 다수당사자, 다수의 계약 및 중

15) 노태약 (2010),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국제사법학회, p.114.

16) 임시적 처분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 종전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사실상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법원을 피하고자 하거나, 임시적 처분이 나올 때까지의 법원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

재절차의 병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2. 한국의 중재규범

### 가. 중재법

한국에서 중재가 최초로 법의 보호아래 제도화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 제13호에 따라 일본 민사소송법이 의용된 때부터이다. 이 조선민사령은 8.15 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대한민국 독립 후에도 그 효력을 지속해 왔다.<sup>17)</sup> 그러나 실제로는 한 번도 이용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1960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 제정될 때에 중재편을 삭제하여 1966년 중재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중재에 관한 법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1965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부를 주축으로 하여 중재법 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에서 12차에 걸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1965년 12월 29일 제112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31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이 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로 공포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중재제도가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sup>18)</sup>

이후 한국의 중재법은 1973년 1차 개정된 이후 1999년 제4차 개정을 통해 UNCITRAL 모범법안을 전면 수용하여 국제중재의 표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 2001년, 2002년, 2010년, 2013년 개정되었으며, 2016년 제9차 개정을 통해 2006년 개정된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범법안(UNCITRAL Model Law, 2006)을 전면 수용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 중재법은 1966년 근대적 중재법의 제정 이후 총 9차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현행 중재법은 1999년 중재법(제4차 개정)의 일부개정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중재법은 1966년 중재법이 제정된 후 33년만의 대폭적인 개정이었으며, 그 형식 및 내용이나 입법 배경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 구 중재법을 폐기하고 새로 중재법을 제정하였다고 할 만큼 중재법체

---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많은 국가의 법원에 각각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개정규칙은 임시적 처분만을 담당할 긴급중재인 제도로 신설하였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주요개정 내용

17) 이태영(2008), “중재합의의 법적 구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p.22.

18) 김광수(2007),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p.10.

계에 큰 변화를 보였다.

이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4번의 중재법 개정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국제사법 또는 민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 개정이었다.

그러나 2006년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범법안(UNCITRAL Model Law, 2006)이 개정되자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안점은 첫째,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도입하며, 셋째,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요건을 집행결정요건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2012년 7월 중재법 개정작업반을 구성하고 5차의 회의 진행하여 개정의 착안점을 선정하였으며, 2013년 3월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차의 회의를 거쳐 개정초안을 작성하였다. 법무부는 개정초안을 기초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년 8월 4일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이후 2015년 10월 8일 국회에 제출하여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 나. 중재규칙

### (1) 국내중재규칙

국내중재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이 중재법에 의하여 국내중재를 적정·공정·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sup>19)</sup>고 규정하여 국내중재규칙이 중재법을 보완하는 법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로 ‘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가 동년 10월 13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총 10장 52조로 구성된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사중재업무를 관할할 기관으로 중재원의 전신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후 ‘상사중재규칙’은 1970년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사단법인대한상사중재협회’로 개편되면서 ‘대한상사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기존 규칙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대폭변경과 명칭변경을 포함한 개정이 1973년 4월 3일에 이루어졌다.<sup>20)</sup>

19)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1조(목적).

1983년 5월 11일에는 국내중재활성화계획에 따른 국내중재 요금하향조정 등 국내외 분쟁해결책 모색에 있어 중재제도의 활용을 위해 규칙이 개정되었다. 1989년 11월 16일에는 중재사건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중재인 선정 절차상의 지연배제, 사무국의 업무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무국조항, 신속절차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1993년 12월 14일에는 중재규칙과 실무와의 괴리, 국제상사중재의 흐름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절차문제에 있어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중재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받아들이는 내용 등을 추가한 개정이 1996년 8월 5일에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에 시행되던 중재법이 UNCITRAL 모범법안을 반영하여 1999년 12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재규칙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도달주의채택, 중재인의 부적격고지 및 기피신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동시에 ‘상사중재규칙’이라는 명칭을 ‘중재규칙’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2000년 4월 27일에 있었다.

이후 ‘중재규칙’의 적용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분쟁처리의 신속성을 제고, 소액사건의 비용부담을 경감 등 중재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둔 개정이 2004년 12월 13일자로 대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2008년 11월 30일에는 KCAB 원장이 요금표상의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sup>21)</sup>

한편 2007년 ‘국제중재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KCAB에는 별도의 국제중재규칙이 없었고, 국내외 중재사건 모두 기존의 ‘중재규칙’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제중재수요에 기준을 맞추고 국제중재를 활성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중재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차츰 제기되었다.<sup>22)</sup>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국제중재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중재실무회의에 국제중재규칙의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후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국제중재규칙들을 검토하여 총 45개조문과 부칙 등으로 이루어진 ‘국제중재규칙’을 완성

20) 김태훈·차경자 (2012),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역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5.  
 21) 김태훈·차경자 (2012),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역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6.  
 22) 김태훈·차경자 (2012),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역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6.

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중재규칙’은 2007년 1월 25일자로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sup>23)</sup>

그러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은 적용범위를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국제중재규칙’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중재규칙’이 국내중재사건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사건에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제중재관행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대형 국제중재사건들은 KCAB가 아닌 외국의 국제중재기관을 통해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KCAB 및 대한민국 내 국제중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중재규칙’을 국제중재사건에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24)</sup>

이에 기존 ‘중재규칙’은 ‘국내중재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중재사건에 적용하고, 국제중재사건은 전면적으로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2011년 9월 1일(대법원 승인)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이 각각 개정 발효되었다.

2011년 개정으로 인해 중재규칙이 이원화되면서, 중재합의에서 중재규칙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규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히 KCAB의 중재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제사건으로 구별하고, 국내중재이면 ‘국내중재규칙’이, 국제중재이면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소액 국제사건의 경우에도 국내중재사건에만 적용되던 신속 절차 규정을 국제사건에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그 규정을 신설하였다.<sup>25)</sup>

이후 2016년 11월 30일 중재법의 개정에 맞추어 2016년 6월 1일자로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16년 11월 30일자로 국내중재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2016년 개정 국내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 규정에서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였으며, 통지 및 제출규정을 신설하여 수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우편,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진하였다.

둘째, 총칙 상 통지 및 제출, 기간, 면책에 대한 규정 신설하여 중재절차의 신

23) 김태훈·차경자 (2012),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역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6.

24) 김태훈·차경자 (2012),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역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7.

25) 김태훈·차경자 (2012),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역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7.

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셋째, 기존 규칙의 내용을 확장하여 중재판정 및 그 기록의 공개와 활용에 대하여 비공개 의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보호 조치를 취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답변서 제출기간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하여 피신청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다섯째, 중재인직을 수락하는 자는 모두 사무국이 정하는 양식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중재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성, 독립성 관련 사유 존부에 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였다.

여섯째,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는 기존 규칙을 개정하여, 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사무국이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 후보자로 구성된 명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중재인 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규칙에서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중재인 선정 권한은 사무국에서 최종 행사하고, 대신 당사자는 중재인 지명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정 대신 지명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여덟째, 중재인 기피신청 절차를 추가하고, 중재인의 권한종료 및 보궐중재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당사자의 중재절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아홉째, 심리절차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선언’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적 정의와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중재 심리 절차 규정의 통합 및 개정 중재법 반영, 조정규정 개선, 신속절차 규정 정비, 중재비용 규정의 변경 등을 통하여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국제중재규칙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sup>26)</sup>

## (2) 국제중재규칙

2007년 국제중재규칙에서는 국제중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당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의 기본적인 원칙 이외에 추가적으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정해진 중재지 및 계약상

<sup>26)</sup>[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medsharebrd/1000?sb\\_cls=1&Num=3&dNum=0&mi\\_code=medsharebrd](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medsharebrd/1000?sb_cls=1&Num=3&dNum=0&mi_code=medsharebrd)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소 중 한 곳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2011년 국제중재규칙 제2조(정의) 제3항에서는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정해진 중재지'를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소 중 한 곳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는 삭제되었다. 아울러 제5항을 신설하여 '영업소'란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상거소'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국제중재 사건에 대해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함에 따라, 국내중재규칙이 적용되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는 '국제중재'간의 상호 조화 및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국제중재규칙에서의 국제중재의 정의도 이와 같다.<sup>27)</sup>

한편 2007년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적용범위를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만을 규정하였으나, 2011년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중재가 국제중재인 경우'에는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제중재규칙 또는 국내중재규칙을 적용할 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될 것이다. 즉, 영업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중재일지라도 당사자 간에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며, 국제중재일지라도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국내중재규칙이 적용된다.<sup>28)</sup> 2016년 국제중재규칙에서의 적용범위도 이와 같다.

그러나 적용 규칙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나(예를 들어, 중재원의 중재만을 명시), '중재원의 중재규칙'으로만 명시한 경우에는 국제중재규칙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라 영업소 소재를 기준으로 국내중재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중재규칙을, 국

27) <http://www.kati.net/index.do>

28)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국제중재), 또한 중재합의에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 이전에 중재인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당사자 간에 '국내중재규칙'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사후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제중재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중재규칙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한편 2016년 개정 국제중재규칙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국제중재규칙은 중재인 확인절차를 도입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당사자나 중재인들이 지명한 중재인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명백히 부당한 중재인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인 지명 확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sup>29)</sup>

둘째,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또는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벌어진 여러 분쟁을 한 번의 중재절차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 추가 및 청구의 병합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제3자를 중재 당사자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중재절차를 진행 중인 동일한 당사자 간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청구의 병합을 통해 다수의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sup>30)</sup>

셋째,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중국적인 권리 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 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2016년 중재법이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과 그 범위를 확대한 것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sup>31)</sup>

### 3. 중국의 중재규범

#### 가. 중재법

중국의 중재법은 1994년 8월 31일에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1949년에 중국이 수립된 후 최초로 발표한 전문적으로 중재사건을 다루는 법률로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또한 외국의 선진적인 중재제도의 경험과 국제관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모델중재법과 뉴욕협약을 참고하였다.<sup>32)</sup>

중국 중재법의 목적은 경제무역 분쟁을 공정하고 적시에 중재하는 것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

29)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883>

30)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883>

31)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883>

32)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p.169-190.

하는 데에 있다(國務院法制 辦公室 2008, 17).

중국 중재법은 총칙을 포함하여 총 8개장<sup>33)</sup>에 걸쳐 8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재계약(제4조~제6조),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제10조~제15조), 중재절차(제21조~제57조), 판정취소의 신청(제58조~제61조), 중재판정의 집행(제62조~제64조), 국제중재 특별규정(제65조~제7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재는 관련법에 따라 독립성을 지니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중국 중재법 제8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 및 성자치구, 인민정부소재지 시의 인민정부 관련부서와 상공회의소에서 통일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중국 중재법 제10조). 또한 중재기관을 행정부문에서 분리함으로써 중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14조에서는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고 행정기관과는 어떠한 종속관계도 없으며 중재위원회 사이에도 종속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제도도 민간자치법정제도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 나. 중재규칙

### (1)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재규칙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섭외중재기관으로 1953년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가 설립을 거친 후 1988년 국무원에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989년 독자적인 정관을 수립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간단체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2012년 CIETAC의 중재규칙은 7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완성된 것이다. 1956년 CIETAC의 중재규칙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혁개방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개정 또한 불가피하였다.

CIETAC가 수리한 중재사건은 1987년 129건은 1985년 37건에 비해 거의 4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재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CIETAC 중재규칙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5차례 개정을 통해 2000년 CIETAC 중재규칙은 공포되었는데 그 이전의 중재규칙과 다른 점은 국내중재사건도 수리 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33)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3장 중재협의, 제4장 중재절차, 제5장 재결철회의 신청, 제6장 집행, 제7장 해외 중재의 특별규정, 제8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 중재사건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은 중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은 지방마다 국내중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약 160여개 이상의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만 지방중재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방경제에 편파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다.<sup>34)</sup> 또한 중재인의 자질 문제<sup>35)</sup>도 있기 때문에 CIETAC로 하여금 국내중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sup>36)</sup>

2012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CIETAC 중재규칙은 중재규칙의 국제화 추세와 중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여러 나라의 기업은 중국에 생산거점으로 두고 있다. 또한 중국의 거대 소비인구는 판매, 마케팅, 기업들을 대거 중국으로 유입하게 하였다.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고 CIETAC가 수리한 중재사건은 매년 급증하게 되었다.

## (2) 상해자유무역지역의 신중재규칙

중국 상해자유무역지역은 2013년 9월 29일에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또한 상해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SHIAC)는 2013년 10월 22일 중국 상해자유무역지역에 중재원을 설립하였고 2014년 4월 8일에는 중국 상해자유무역지역에 새로운 중재규칙을 발표하였다.<sup>37)</sup> 그 중재규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IETAC)의 분쟁소동 이후 상해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SHIAC) 중재판단의 집행에 대해서 중국 재판소가 유효한 중재판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쟁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상해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SHIAC)는 상해시 사법국의 승인을 받았기에 상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IAC) 중재판단의 집행에 상해시의 인민법원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재판단의 집행 장소가 상해시에 한정될 경우에는 상해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SHIAC)에 중재신청을 하고, 만약 중재

34) 신두식·이주원 (2012), 「국제무역클레임과 중재실무」, 두남출판사, P.58.

35) 중재인 가운데 법관은 퇴역군인이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로 구성되어 있어 서방 국가에 비해 자질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36) 신군재·김경배 (2004), “중국기업과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p.58.

37) 홍재성·신범수 (2015) “중국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 상해자유무역지역의 신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통권 42호, 한국무역연구원, pp.328.

판단의 집행 장소가 상해시에 한정되지 않고 기타 지역에서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CIETAC 북경본부에 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sup>38)</sup>

CIETAC 북경본부와 상해지부, 화남지부와의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9월 4일 “중재 사법심사사건의 정확한 심리에 관한 문제의 통지”를 발표하였다. 그 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쟁사건에 기인해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사건 또는 당사자가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상해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화남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하에서 내려진 중재판단을 취소신청한 사건에 대해 각 지역의 인민법원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심판위원회에서 거친 토론의 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최고인민법원은 각 지역의 인민법원에서 제출한 토론의 의견을 검토한 후 회답을 한다. 그러면 각 지역의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을 받아 판단을 내린다.” 이와 같이 최고인민법원이 보고제도를 확립한 것은 판단의 통일과 지방에 대한 보호주의 관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SHIAC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평가는 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상해자유무역지역의 중재원설립과 최고인민법원의 분쟁사건에 대한 보고제도 확립은 SHIAC의 존재와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sup>39)</sup>

## 제2절 중재기관

### 1. 한국의 중재기관

#### 가. 대한상사중재원(KCAB)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은 중재법(법률 제1767호)에 의거하여 1966년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중재원 전신)로 발족하였으며, 민법 제32조(사단법인의 설립) 및 산업자원부 설립인가 제142호에 의거 1970년 3월 21일 새롭게 설립된 후, 1980년 8월 29

38) 홍재성·신범수 (2015) “중국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 상해자유무역지역의 신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통권 42호, 한국무역연구원, p.328.

39) 홍재성·신범수 (2015) “중국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 상해자유무역지역의 신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통권 42호, 한국무역연구원, p.328.

일 현재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2016년 6월 15일부로 주무관청이 기존의 상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설립목적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판결과 같은 확정력 있는 판정을 내리고 강제집행을 보장하는 중재와 당사자 간의 우의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알선을 통하여 분쟁을 신속·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무역진흥을 촉진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함에 있다.

한국의 상사중재제도는 서구, 특히 미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발족하여 30여년에 이르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비교적 착실하게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한국에서 상사중재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가 벌어진 것은 1955년 유엔 극동아시아경제위원회 제1차 무역분과위원회를 통해서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무역분쟁도 늘어났다. 이와 함께 1963년에는 중재기관의 설치를 상공회의소의 사업계획으로 채택하고 1964년 6월에는 정부의 관계부처와 민간업계·학계, 그리고 법조계의 권위자들을 망라해 국제상사중재제도 창설에 관한 간담회를 갖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중재법의 제정과 상사중재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도록 결의했다.

1965년 10월 7일에는 상공부가 상역검 제1313호와 대한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국제간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해 연구해 주도록 요청했다. 1965년까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상사분쟁을 담당하고 국제관례와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일반중재조정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공신력 있고 체계적인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상공회의소 산하에 공식적인 중재기관으로서 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12차에 걸쳐 모임을 가진 끝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로 중재법이 공포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명실 공히 상사중재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중재법의 제정에 뒤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1966년 10월 13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규칙을 제정·운용하면서부터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앞서 상사중재업무를 관할할 기관으로 1966년 3월 22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 위원회는 제정된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사건을 처리했으나 전문성이 뒤따르지 못하게 되어 1970년 2월 12일 임시총회

를 개최하고 ‘사단법인체로 독립 운영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사중재위원회는 해체되고 대한상사중재협회가 3월 16일에 설립되어 상공부에 사단법인 허가신청을 제출한 결과 3월 22일에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되어 전문중재기관이 탄생되었다.<sup>40)</sup>

대한상사중재협회는 무역의 신장과 함께 업무도 늘어나게 되어 기구를 확대하는 등 성장하였다. 동 협회는 시대의 변천과 함께 1980년 9월 1일자로 명칭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으로 바꾸면서 80년 한국무역의 숨은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넓혀 나갔다. 이 기관은 상설중재기관으로 강력한 법적 진원을 받아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기능의 국제화를 위하여 뉴욕협약에 가입하고자 상공부와 외무부에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1973년 1월 비상국무회의의 비준을 얻고 동년 2월 8일자로 UN사무총장에게 가입문서를 기탁하여 그로부터 90일 후인 1973년 5월 9일자로 42번째의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이 이와 같은 UN의 노력을 인정하고 뉴욕협약에 제42번째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은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중재제도의 상징이며 각국 간 상호 협력과 유대강화의 기틀인 동시에 한국의 상사중재제도 발전의 전환점이라 하겠다. 그 후 대한상사중재원은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추진, 대폭적인 홍보강화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 왔다. 이에 힘입어 1996년에는 국제상사중재 분야의 UN총회라고 할 수 있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 ICCA) 제13차 총회를 유치하여 세계에 한국중재제도의 선진화를 과시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중재기관장 회의(Asia Pacific Arbitration: APRAG)의 회장국이 되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중재사건 분야의 다양화로 중재제도 토착화에 노력한 결과 중재사건이 양적으로도 대폭 증가하였고 중재신청 금액도 대형화되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중재제도의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쟁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유능한 중재인들을 확보를 통하여 1,000여명이 넘는 중재인명부를 작성·유지하여 세계 유수의 중재기관과 견주어 손색없는 중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40) Altansuvd, Luvsandorj(2018), "한국과 몽골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pp.15.

## 나.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처리 현황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 접수 현황은 2016년 기준으로 상담을 제외한 처리건수는 국내 1,072건, 국제 199건, 총 1,27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중재는 381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선은 89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처리 현황(2016년)

(단위: 건, 억원, %)

구분	기간	2016년		2015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국내	9,801	29,912	10,277	14,753	△4.6	102.8
	국제	917	6,256	897	4,304	2.2	45.4
	소계	10,718	36,168	11,174	19,057	△40.8	89.8
중재	국내	319	16,610	339	5,813	△5.9	185.7
	국제	62	2,114	74	2,505	△16.2	△15.6
	소계	381	18,724	413	8,318	△7.8	125.1
알선	국내	753	38	847	165	△11.1	△77.1
	국제	137	154	92	303	48.9	△49.1
	소계	890	192	939	468	△5.2	△59.0
상담	국내	8,729	13,264	9,091	8,775	△4.0	51.1
	국제	718	3,988	731	1,496	△1.8	166.6
	소계	9,447	17,253	9,822	10,271	△3.8	68.0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2017.12), 2016년 클레임통계.

## 2. 중국의 중재기관

### 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국의 중재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구분하고 있어 중재위원회도 ‘국내중재위원회’와 ‘섭외(涉外)중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sup>41)</sup>

특히, 중국정부는 건국 이후 국제경제 및 무역발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국제상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제 주체를 보호 하고자 1956년 4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와 (中國國際商會,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CCIC)<sup>42)</sup> 산하에 민간상설중재기관인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1988년 국무원의 정부조직 확대 개편과정에서 기관 명칭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sup>43)</sup>

2018년 ‘CIETAC’에서 심리한 섭외중재사건은 총 522건으로, 섭외중재 분쟁금액은 1015.90억(위안화)에 달하며 처음으로 1000억(위안화) 규모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6%가 증가하였고, 분쟁당사자들과 관계된 국가 및 지역은 약 60여개로, 영문과 중문, 불어로 작성된 중재판정문의 중재사건이 총 79건으로 조사 되었다.

‘CIETAC’은 국내중재기관과 별도로 국제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민간 상설 중재기관으로서, 「중국 중재법」 제7장(섭외중재의 특별규정)에서 “섭외경제무역, 운송 및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sup>44)</sup>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이하, 「CIETAC 중재규칙」이라 칭함)<sup>45)</sup>에 근거하여 베이징(北京)에 본부를 설립하고, 상해(上海)·심천(深圳)·항주(杭州)·무한(武漢)·천진(天津)·중경(重慶)과 복주(福州) 등지에 각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부는 ‘CIETAC’의 파생기구로서 ‘CIETAC’의 권리를 부여받아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중재사건을 관리하며 각 중재판정부에서 중재 관할권과 주체자격에 대해 결정을 하고 ‘CIETAC’의 중재규칙 및 중재인명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CIETAC’은 「중국 중재법」과 「CIETAC 중재규칙」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1회의 중재로 종결하는 ‘단심제(一裁終局)’를

41) 중국에는 중국국제경제중재위원회(CIETAC),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을 포함하여, 북경, 광주, 무한, 상해 등지에 약 180여개 이상의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음(吳杰 (2005), 「仲裁法精要与依据指导:法律專業人員高級助手書系」, 人民出版社, p.30).

42)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87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국제상회’라는 명칭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됨.

43) 양효령 (2019),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운영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試行)에 관한 고찰", 「東北亞法研究」, 제12권, 제3호 pp.29-58.

44) 「중국 중재법」 제65조.

45) 「CIETAC 중재규칙」은 1988년 9월 12일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총 8차례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현행 「중재규칙」은 2014년 11월 4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시행하고, 주된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조항의 독립성’이 보장하고, ‘당사자의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를 접수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지키지 않고 중재합의 중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직소금지 효력’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상설중재기관의 기관중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중재 및 국외중재는 모두 법정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하여야 한다.<sup>46)</sup>

### 나. CIETAC의 분쟁처리 현황

2018년도 CIETAC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CIETAC가 수리한 중재사건은 총 2962건이다. 이 2017년의 비해 28.89%가 증가하였다.<sup>47)</sup> 그중 국외중재사건은 522건으로(양측이 모두 해외 당사자인 경우인 사건은 36건) 9.66%증가하였다.

---

46) 「중국 중재법」 제18조, “당사자가 중재합의에 중재기관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중재합의는 무효가 된다.”

47)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http://www.cietac.org/index.php?m=Page&a=index&id=24>

<표 2-2> CIETAC 분쟁처리 현황(2000-2018)

(단위: 건)

연도	국내외 중재	국외 중재
2018	2962	522
2017	2298	476
2016	2181	483
2015	1968	437
2014	1610	387
2013	1256	375
2012	1060	331
2011	1435	470
2010	1352	418
2009	1482	559
2008	1230	548
2007	1118	429
2006	981	442
2005	979	427
2004	850	462
2003	709	422
2002	684	438
2001	731	562
2000	633	543

자료 :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 제3절 중재절차

### 1. 한국의 중재절차

#### 가. 국내중재규칙

##### (1) 중재합의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중재인의 선정절차와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sup>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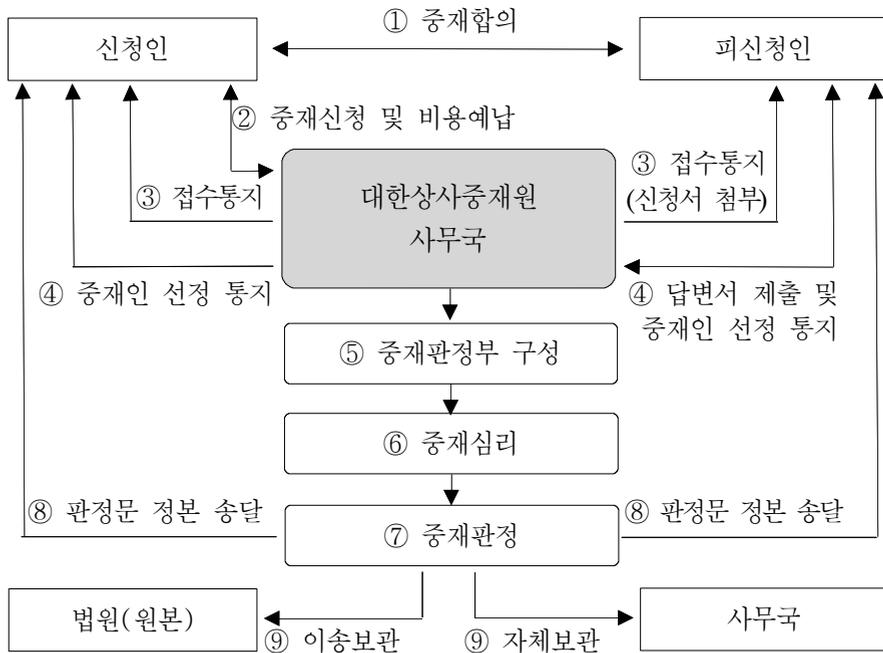
중재신청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제2항에서는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동 계약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sup>49)</sup>

---

48) 한국 중재법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2항 및 제20조(중재절차) 제1항.

49)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

<그림 2-1>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절차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중재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기관, 중재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이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중재신청 및 비용예납

중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본부(서울)나 지역본부(부산)의 사무국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sup>50)</sup>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연락처
2. 신청 취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예상액 표시)

50)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

3.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4. 원용하는 중재합의의 내용
5. 작성날짜<sup>51)</sup>

중재비용은 관리요금, 경비, 중재인 수당 및 기타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구분된다. 관리요금은 신청인이 관리요금표에 따라 사무국에 납부한다. 경비는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예납한다. 한편 중재인수당은 신청인이 납부하며, 중재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비용이나 검증, 감정, 증인신문, 통역 등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sup>52)</sup>

### (3)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사무국은 중재의 신청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당해 신청이 국내중재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 및 대리인 요건, 신청취지, 신청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원용하는 중재합의의 내용이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다. 중재절차는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된다.<sup>53)</sup>

### (4) 답변서 제출

피신청인은 사무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및 연락처
2. 답변 취지
3. 답변 원인이 된 사실 및 분쟁의 대상

51)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

52)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

53)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

#### 4. 작성날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보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sup>54)</sup> 다만,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리 없이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사무국은 피신청인의 답변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한편 동일사안에 대해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을 반대신청이라 하는데, 피신청인은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는 당초의 중재신청 절차와 동일하며, 중재판정부는 본신청과 반대신청을 병합 심리한다.

##### (5)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사건을 판정할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는 그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하는 경우 사무국이 정하는 양식의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인의 수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명 또는 3명으로 한다.<sup>55)</sup> 한편 중재인 선정방식은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으로 구분된다.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중재인 및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sup>56)</sup> 한편 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6) 중재심리

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심리의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에게

54) [http://www.kcab.or.kr/jsp/comm\\_jsp](http://www.kcab.or.kr/jsp/comm_jsp)

55) [http://www.kcab.or.kr/jsp/comm\\_jsp](http://www.kcab.or.kr/jsp/comm_jsp)

56)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주장, 증거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sup>57)</sup>

심리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되며, 심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를 증거로 접수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무국이나 중재판정부가 요구하는 서면, 증거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를 직접 심리한다.

심리시에 중재판정부에 제출치 못하고 심리 당시의 합의나 그 이후의 합의 및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무국이 접수하여 중재판정부 및 타방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심리를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sup>58)</sup>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에게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주장, 증거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계약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칙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명하여야 한다.<sup>59)</sup>

### (7) 중재판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중재심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 절반 이상 찬성으로 판정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

57)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58)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59)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재하여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판정주문 및 판정이유
4. 판정문 작성일자 및 중재지

중재판정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가 있거나 중재인중에 외국 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을 때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할 수 있으며, 이때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는 판정문은 모두 이를 정본으로 한다. 그러나 국영문간에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국어에 의하여 해석한다. 60)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61)

#### (8) 판정문 정본 송달

사무국은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을 중재비용을 납부한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최후로 알려진 주소에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 하거나 직접 교부한다.

중재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후 이의 수령을 확인하는 우편물 배달증 명서가 도착하면,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과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자체 보 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 나. 국제중재규칙

#### (1) 중재합의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합의가 필요한 바, 당사자 간 계약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해결조 항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 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62)

60)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dNum=0&pageNum=1&subNum=4&mi\\_code=arbi\\_04](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dNum=0&pageNum=1&subNum=4&mi_code=arbi_04)

61)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특히, 2011년 9월 1일 이후에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국제중재 즉, 일방 당사자가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된다.<sup>62)</sup>

## (2) 중재신청

신청인은 중재신청 시 한화 1,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신청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사무국은 양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중재신청의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동시에 피신청인에게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한다.<sup>64)</sup>

사무국은 또한 중재비용(관리요금, 중재인의 수당 포함)을 추산하여 양 당사자에게 이를 균분하여 예납할 것을 요청하고, 납입된 예납금은 절차종료 시 정산하게 된다.<sup>65)</sup>

## (3) 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 시 피신청인은 반대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반대신청은 본신청과 병합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분쟁금액은 양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반대신청에 따른 별도의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특별히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하여 다투거나 중재절차의 진행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할 수 있다.<sup>66)</sup>

## (4) 중재판정부의 구성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 단독중재인이 판정을 내리게 된다. 당사자들이 요청할 경우 사무국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재인들의 명단을 제공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거나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대신하여

62)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대한상사중재원-중재절차

63)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대한상사중재원-중재절차

64)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dNum=0&pageNum=1&subNum=4](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dNum=0&pageNum=1&subNum=4)

65)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

66)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7.jsp?sNum=6&dNum=0&pageNum=1&subNum=7&mi_code=arbi_07)

선정한다. 이를 위하여 중재원은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국제중재위원회<sup>67)</sup>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sup>68)</sup>

#### (5) 심리의 진행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하에 중재심리를 진행한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두 또는 서면의 모든 교신은 당사자들 간에 또는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간에 직접 이루어진다.<sup>69)</sup>

#### (6) 중재판정과 중재판정문 송달

중재심리가 종결되면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리게 된다. 미납된 중재비용이 없을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한다.<sup>70)</sup>

#### (7) 중재판정문의 집행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만일 불리한 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한국법원 또는 외국법원에서 집행판결 또는 집행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 2. 중국의 중재절차

### 가. 중재신청과 답변서 제출

CIETAC 중재절차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개시된다(CIETAC 중재규칙 제11조).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규칙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인 서명 또는 그의 대리인이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과 동시에 관련 자료와 중재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비용 표에 정해진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12조).<sup>71)</sup>

67)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조(규칙과 기관) 제3항은 국제중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저명 국제중재인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중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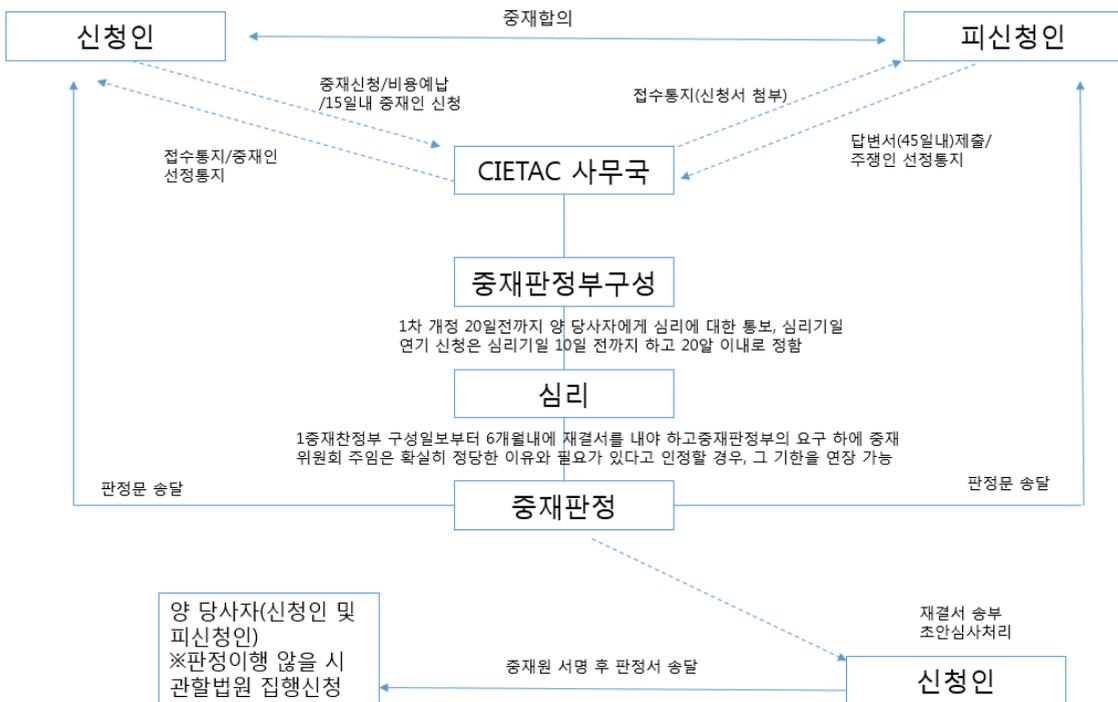
68)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69)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70)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4.jsp?sNum=3)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분쟁의 발생 전 또는 분쟁의 발생 후에 당사자 간에 합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아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24조).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수리된 즉시 중재위원회 규칙, 중재통지서, 중재인명부를 양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 발송함과 동시에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첨부서류도 피신청인에게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그림 2-2> 중국 CIETAC의 중재절차



자료 :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79.

신청인은 자신의 중재신청 취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부에서 그 변경신청 제출시기가 너무 늦어 중재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17조).

중재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기간연장을

71)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72.

요청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요청사유에 준하여 기간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인 경우에는 중재원에서 이를 결정한다. 답변서는 피신청인 서명 또는 위임 대리인이 날인하며, 중재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및 그 답변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그 이유와 관련 서류와 답변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이 지난 답변서의 수리 여부는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고 비록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중국 중재법 제25조, CIETAC 중재규칙 제15조).

만약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제기 할 경우,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기간연장을 신청한 이유를 소명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기간연장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인 경우 중재원이 결정한다.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서가 수리된 경우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서 접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기간연장을 신청한 이유를 소명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기간연장을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이의신청 취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부에서 변경신청 제출시기가 너무 늦어 중재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고 법원에서 판단되는 경우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17조).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모든 중재관련서류들은 중재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모든 중재 서류들은 당사자 간에 기타 합의, 중재판정부의 동의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없다면 중재원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CIETAC 중재규칙 제20조). 당사자들은 중재신청서, 반대신청서, 답변서 또한 기타 중재서류를 제출할 때 각 5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그 수에 상응한 부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맞추어 부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단독 중재인일 경우 제출 부수는 2부까지 감소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21조).<sup>72)</sup>

72)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0.

당사자는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그 법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관할법원에 당사자의 신청을 이송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해당법률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원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sup>73)</sup>

## 나. 중재판정부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CIETAC 규칙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중국 중재법 제30조). 중재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중재인명부에서 올바르게 공정한 사람을 중재인으로 위촉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해야 한다.<sup>74)</sup>

또한 중국의 중재법은 회피와 기피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재인의 기피와 회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으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중국 중재법 제36조, CIETAC 중재규칙 제33조). 중재인이 기피와 회피로 인하여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또는 지정한 절차에 따라 대체할 중재인을 다시 지정 또는 선정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37조).<sup>75)</sup>

## 다. 중재심리

당사자는 심리방식을 서로 약정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35조 제1항). 사건을 심리 시에는 구술심리가 원칙으로 한다이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심리에 의해 진행할 것을 동의하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동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구술심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들도 이를 동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서, 기타 자료, 답변서만을 근거로 서면심리에 의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정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39조, CIETAC 중재규칙 제35조 제2항).

73)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0.

74)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1.

75)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2.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공개적인 진행을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sup>76)</sup> 다만, 국가 기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중국 중재법 제40조, CIETAC 중재규칙 제38조 제1항). 비공개심으로 진행하는 경우, 양당사자, 중재대리인, 증인, 통역관, 중재인, 관련전문가, 지정된 검정인 및 기타 관련된 사람들은 해당 사건의 실체 및 절차에 관한 상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CIETAC 중재규칙 제38조 제2항).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CIETAC 중재규칙 제41조),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43조). 증거는 반드시 개정 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 증거에 대해 대질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45조). 또한 중재판정부가 전문성을 지닌 문제에 대하여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양당사자가 지정한 감정부서에 교부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정부서에서 감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중국 중재법 제44조, CIETAC 중재규칙 제44조).<sup>77)</sup>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당사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중국 중재법 제46조).<sup>78)</sup>

## 라. 중재판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고 중재원장이 그 필요성과 u51012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상기 6개월 기간에서 제외된다(CIETAC 중재규칙 제48조).

중재판정부는 사실 및 계약의 조건에 근거하여 법률 및 국제관례를 참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독립하여 공정하게 판정을 하여야 한다.<sup>79)</sup> 만약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르고, 이러한 합의가 없거나 법률의 강제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내용에 적용할 법률

76)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2.

77)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3.

78)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3.

79) 한나희·육영춘·이갑수(2019), “중국 상사중재에서 CISG의 적용에 관한 연구 - CIETAC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p.68.

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서에 분쟁사실, 판정이유, 판정결과, 중재비용 부담, 판정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양당사자 간에 분쟁사실과 판정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당사자간의 화해합의의 내용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분쟁사실과 판정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에 당사자가 판정을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과 기한 내 이행을 지체할 경우의 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sup>80)</sup> 중재판정부는 판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중재위원회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도록 지시하면 중재판정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판정서를 정정하고 서명한 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반드시 중재위원회 날인을 받아야 한다.<sup>81)</sup>

3인 중재 심리 사건의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 다수 또는 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며 소수의 의견을 기록하여 판정서에는 별첨할 수 있으나 그 의견은 판정의 일부로 구성하지는 않는다.<sup>82)</sup>

또한 당사자가 요청하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할 경우, 중재판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고 중재판정부가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부는 최종판정 전에 사건의 일부 주장에 대해 먼저 부분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부분판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CIETAC 중재규칙 제50조).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증거를 제시하여 중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사실 조사와 심사 후 중재판정이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와 일치할 경우 또는 판정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배된다고 여겨질 경우 중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기각한다. 이러한 결정은 중급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중국 중재법 제5장).

## 마. 중재판정의 이행

당사자는 중재판정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중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판

80) 황병준(2018), “중국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에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 거부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p.111.

81) 이정·박성호(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4.

82) 이정·박성호(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4.

정서에 이행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판정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CIETAC 중재규칙 제55조, 중국 중재법 제62조). 만약 일방 당사자가 판정의 집행을 신청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판정의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판정철회 신청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판정에 중국 민사소송법 제2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관할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국 인민법원이 판정 취소신청을 결정할 경우 집행 종결을 결정하고 판정 취소신청이 기각될 경우 집행하도록 결정한다.

### **바. 중재의 조정과 화해**

CIETAC 중재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양당사자가 조정을 원할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을 조정이 가능하며 또한 양당사자는 스스로 화해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 중재법 제51조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양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면 중재판정부는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못하면 즉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고 합의를 달성하면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의 결과에 따라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는 판정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여 중재와 조정을 결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sup>83)</sup>

83)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p.186.

## 제3장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제1절 중재판정의 개념과 적용법률

#### 1. 중재판정의 의의와 유형

##### 가. 중재판정의 의의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judgement) 또는 결정(decision)에 대응되는 것이 중재절차에서의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다. 그렇지만 중재판정에 관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UNCITRAL 모범법안, 한국 중재법, 기타 각종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뉴욕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 협약에서도 중재판정에 관한 정의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효력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최종판정 외에도 일부판정이나 잠정판정 등의 여러 종류의 중재판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개념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중재판정이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주로 실체적인 쟁점에 관하여 내린 중재판정부의 판단으로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4)</sup> 다만 중재판정부가 내린 모든 결정이 중재판정인 것은 아니다.

가령 중재판정부는 중재과정에서 수시로 절차명령(procedural order)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절차명령은 서면으로 내려지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나. 중재판정의 유형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은 판정의 종국성 여부에 따라 잠정판정과 종국판정으로, 당해 판정에서 다루는 쟁점의 범위에 따라 전부판정과 일부판정 및 추가판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1) 종국판정(Final Award)

84) Gary B. Born (2009),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p.2434.

중국판정이란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모든 쟁점(또는 남아있는 모든 쟁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절차를 종료하는 단계에 내린 최후의 판정, 즉 최종판정을 말한다.<sup>85)</sup> UNCITRAL 모범법안과 우리 중재법은 중재절차는 중국판정(終局判定) 또는 중재판정부의 종료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6)</sup>

## (2) 일부판정(Partial Award)과 잠정판정(Interim Award)

일부판정과 잠정판정(임시판정)은 모두 분쟁의 일부 특정 쟁점에 관하여 내려지는 판정이다.<sup>87)</sup> 두 용어가 실무적으로 엄밀한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중재판정부는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태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좁은 의미로는 일부판정은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일부 사안을 완전히 결정짓는 내용의 판단임에 반해, 잠정판정은 대개 분쟁해결에 선결적인 특정 쟁점에 관하여 내리는 판단이다.

일부판정이나 잠정판정은 특정 쟁점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거나 또는 분쟁 해결에 선결적인 쟁점이 문제되는 때 이를 절차 중간 단계에서 먼저 판단을 내리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특정 쟁점에 관한 심리분리절차(bifurcation)를 진행하여 일부판정이나 잠정판정을 내리기도 한다.

일부판정은 중국판정과 달리 중재 절차를 종료시키지는 아니하지만, 청구의 일부에 대해 중국적 판정으로서 내려진 경우에는 우리 중재법상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된다.

UNCITRAL 모범법안은 2006년 개정으로 임시적 구제수단을 명하는 잠정판정 등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분쟁 결정시까지 현상 유지 혹은 회복, 손해 발생의 예방 혹은 금지를 위한 조치, 판정 이행에 필요한 자산 보전 조치 및 분쟁해결에 관련된 중요한 증거 보전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임시적 처분을 판정 또는 그 이외의 형식으로 내릴 수 있으며,<sup>88)</sup> 이러한 임시적 처분은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

85) 넓은 의미의 중국판정, 즉 ‘중국적 판정’은 해당 쟁점에 관하여 뒤집을 수 없는 구속력 있는 판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종판정뿐 아니라 일부판정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86) 모범법안 제32조 제1항; 중재법 제33조 제1항.

87) 중재판정부가 일부판정, 잠정판정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중국판정을 할 권한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국제중재규칙 제32조 제1항이나 ICC 중재규칙 제2조 제3항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중국판정 외에도 일부판정, 잠정판정 등을 내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였다.<sup>89)</sup> 그러나 각 국가의 법제에 따라서는 임시적 처분이 판정의 형태로 내려지더라도 이러한 잠정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 (3) 추가판정(Additional Award)

추가판정은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중재판정이다.<sup>90)</sup>

UNCITRAL 모범법안이나 한국 중재법, 기타 여러 기관중재 규칙들은 추가판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sup>91)</sup>

### (4) 화해중재판정(Consent Award)

당사자들은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라고 하여도 언제든지 분쟁에 관하여 화해합의를 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는 중재절차를 단순히 종료시킬 수도 있지만 분쟁의 확정적인 종결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게 당사자들이 합의한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요청에 응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것을 화해중재판정이라 한다. 화해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적용되는 중재법규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합의 없이도 판정의 이유기재가 생략되기도 한다.<sup>92)</sup>

### (5) 내국판정(domestic award)과 외국판정(foreign award)

중재판정이 내국판정인가, 외국판정인가의 구별실익은 국제조약 특히 뉴욕협약이 적용되는가에 있다. 즉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은 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 및 ②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을 외국판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판정인가의 여부에 따라 뉴욕협약의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88) 모범법안 제17조 제2항.

89) 모범법안 제17조의 H 제2항.

90) Gary B. Born (2009),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p.2440.

91) 모범법안 제33조; LCIA 중재규칙 제27조; 한국 중재법 제34조(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등.

92) 모범법안 제31조 제2항; 한국 중재법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제2항.

내국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국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판정의 경우에는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뉴욕협약에 따르며, 뉴욕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각 국가의 국내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 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적용법률

### 가. 승인과 집행의 개념

승인(recognition)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원이 외국 중재판정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과<sup>93)</sup> ‘우리 법원이 외국 중재판정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다.<sup>94)</sup>

어떤 의견에 따르더라도 승인은 법원이 진행하는 사건에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사안이 문제될 때 소극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다. 어떤 사안에 관하여 이미 중재판정이 내려졌는데 같은 사안이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경우, 법원이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한다면 해당 사안은 중재판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승인은 ‘방패’로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sup>95)</sup>

반면, 집행(enforcement)은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을 승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중재의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판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는 압류, 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은 ‘검’으로 비유된다.

또한 승인은 집행 없이도 허용될 수 있지만 집행은 승인됨을 전제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은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96)</sup>

### 나. 적용 법률

93) 목영준 (2011), 「상사중재법」, 박영사, p.270.

94) 석광현 (2007),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서울: 박영사, p.248.

95) 목영준 (2011), 「상사중재법」, 박영사, pp.270-271.

96)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2004),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ondon: Sweet & Maxwell, Limited, pp.448-449.

중재판정은 중재인, 중재지 또는 준거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집행국가의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에 따라 내국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으로 구분하여 승인과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중재법에서도 중재판정의 취소나 승인 및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중재판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중재판정  
(내국중재판정)
- ② 중재지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국가인 외국중재판정  
(뉴욕협약 적용 중재판정)
- ③ 중재지가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인 외국중재판정  
(뉴욕협약 비적용 중재판정)

대한민국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제1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sup>97)</sup>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83조(구법 제267조)에서는 “국외중재기관의 판정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승인·집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그의 재산의 소재지의 중급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에 의하거나 상호보증(互惠原則)에 따라 이를 다루어야 한다.”<sup>98)</sup>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중재판정의 경우 각국의 중재법에 규정된 취소 사유가 없으면 승인 및 집행되어야 하므로, 위 취소사유가 내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된다. 뉴욕협약 적용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뉴욕협약 제5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뉴욕협약 비적용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각국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준용한다.

외국중재판정이 뉴욕협약 적용 중재판정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뉴욕협약 가입하면서 제1조 제3항에 따라 ‘상호주의 유보선언’<sup>99)</sup>과 ‘상사유보선언’을 하였는지를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재지인 외국이 뉴욕협약 체약국이 아니라면 외국중재

97) 한국 중재법, 제39조, 제1항.

98)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

99) 상호주의의 유보는 중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중재당사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법원이 그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부여할 때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한국법상 상사분쟁에 관한 중재판정이 아니라면 역시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뉴욕협약 제7조 제1항은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신청인이 그보다 유리한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뉴욕협약 적용 중재판정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국내법 또는 국제조약에 기하여 집행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sup>100)</sup>

## 제2절 외국중재판정의 범위

###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범위는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그 승인 및 집행을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또한 “중재판정”이라 함은 개인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sup>101)</sup>

어떠한 국가든지 뉴욕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또는 협약의 제10조에 의해 확대 적용을 통고할 때에 상호주의의 기초에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국가든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이러한 선언을 행하는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sup>102)</sup>

100) 서정일 (2003), 「국제상사중재법론」, 도서출판두남, p.172.

101) [https://www.arbitration-icca.org/media/10/82483098911197/icca\\_judges\\_guide\\_korean\\_final.pdf](https://www.arbitration-icca.org/media/10/82483098911197/icca_judges_guide_korean_final.pdf)

102) <https://blog.naver.com/whack17/220007587957>

## 2. 한국의 외국중재판정 범위

대한민국 중재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재법의 적용범위는 중재법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한 중재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현행 한국의 중재법은 원칙적으로 중재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영토주의(territoriality principle)를 채택했다.<sup>103)</sup>

한편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은 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 및 ②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을 외국판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판정인가의 여부에 따라 뉴욕협약의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중재법상 내국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sup>104)</sup>

외국판정의 경우에는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sup>105)</sup>되는데,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뉴욕협약에 따르며, 뉴욕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1항 및 제27조(집행판결)를 준용한다.

## 3.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범위

중국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은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의 중재는 그 성격에 따라 섭외중재판정, 외국중재판정 및 국내판정으로 구분된다.

그 이유는 중재판정의 집행, 집행거부 및 취소등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규정을

103) 뉴욕협약

104) 한국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항.

105) 한국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재법상 국내중재판정은 국제 또는 섭외 요인이 없는 중국 중재기구의 중재판정을 의미하며 중국 민사소송법 제 283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중재는 외국 중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결을 의미를 한다.

외국중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국중재기관에서 진행하였는지 단 하나 이다. 국외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결은 중재지가 중국 국내 및 국외를 막론하고 모두 외국중재로 간주한다.<sup>106)</sup>

중국법은 중재판결의 국적문제를 처리할 때 뉴욕협약의 지역 표준과 중국 국내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재기관 표준 2가지 기준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중국 법원은 외국중재기관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 제3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한국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제1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sup>107)</sup>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구법 제267조)에서는 “국외중재기관의 판정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승인·집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그의 재산의 소재지의 중급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에 의하거나 상호보증(互惠原則)에 따라 이를 다루어야 한다.”<sup>108)</sup>고 규정하고 있다.

#### 1. 행위능력의 결여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및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무능력자로 확정된 경우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이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

106) 张庆元·陆薇 (2010), “国际商事仲裁中的国籍问题”, 「仲裁研究」, 2010(2), p.2.

107) 한국 중재법, 제39조, 제1항.

108) 중국 민사소송법, 제283조.

## 가. 판단 기준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연인의 경우 당사자의 본국법이,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설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sup>109)</sup>

중재합의의 성립, 유효성 및 해석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sup>110)</sup> 그런데 계약상 중재조항의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인 지정은 없으나,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된 계약의 준거법, 즉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할 경우 중재합의의 준거법도 묵시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는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고 있다.

부정설은 중재합의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된 계약상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재합의도 같은 준거법에 의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반면 긍정설은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모든 조항의 해석에 있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주된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한 때에는 그 법을 중재조항의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고 본다.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정설을 지지하는 경우라면 중재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중재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법을 적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설상 유력하다.<sup>111)</sup>

## 나. 입증책임 및 입증할 사항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당사자

109) 강수미 (2006), “중재합의의 성립에 효력에 관한 준거법”,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p.97; Gary B. Born (2009),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pp.553-554. 이에 대하여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는 중재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의 준거법에 관한 저촉규범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목영준 (2011), 「상사중재법」, 박영사, p.113.

110) 강수미 (2006), “중재합의의 성립에 효력에 관한 준거법”,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p.83.

111) Keechang Kim (2008), “Arbitration Agreement under Korean Law,”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 3, p.83.

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다.<sup>112)</sup> 이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여야 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중재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이고,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는 명시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지만,<sup>113)</sup> 중재인, 중재기관을 잘못 지정하거나 복수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sup>114)</sup> 다만, 선택적 중재합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중재에 이의 없이 응하지 않는 한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2, 방어권의 침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재법 제38조 및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따라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고 내려진 중재판정은 그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 가. 판단 기준

이 사유는 중재에 있어서 절차적 보장 내지 심문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다만 당사자에게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음에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중재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중재판정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방어권침해의 정도에 대하여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였다.<sup>115)</sup>

112) 한국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2항 제1호;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113) 한국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114) 한국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6. 26. 선고 80나533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1. 선고 91가합45511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판결 등 참고.

115) 한국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국제적으로도 방어권 침해로 인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거부는 패소당사자의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패소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집행국 법령에 따라 판단하지만, 집행국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뉴욕협약상의 절차적 방어권 침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국의 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 나. 송달, 문서제출

한편 중재에서는 중재신청서를 비롯한 서류 송달이 소송절차와 같이 엄격하게 규율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서 중재신청서를 받거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법무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전달을 받은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방어권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sup>116)</sup> 또한 뉴욕협약 비적용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도 송달 요건은 소송절차상의 송달보다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중재인 선정절차

피신청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중재인을 선정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 소정의 집행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 3.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 또는 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호 및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이 있으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이 중

116) 김갑유 (2012),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pp.323-324.

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판단 기준

이 사유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중재에서 내려진 구체적인 판정 내용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인의 월권문제로 중재판정이 된 사례는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중재인이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가 제시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判斷遺脫)이라 한다. 이러한 중재인의 판단유탈은 뉴욕협약 제5조의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중재판정의 집행거부는 할 수 없다.<sup>117)</sup>

### 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

한국 법원은 중재합의가 포함된 계약관계로부터 유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시하기도 하고,<sup>118)</sup> 당사자들이 중재 이전에 협의를 통해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쟁점들에 대하여도 어느 일방에 의해 합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등<sup>119)</sup> 비교적 중재합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sup>120)</sup>

##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절차상의 하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 및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2항 제1호 라목 및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

### 가. 판단 기준

117) 김경배 (2005),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p.309.

118) 한국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17153 판결.

119) 한국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120) 김갑유 (2012),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p.327.

중재판정의 집행을 저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한편 중재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중재판정이 되었을 때 동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단계에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뉴욕협약에는 분명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각국의 소송법에는 책문권(責問權)의 상실<sup>121)</sup> 및 금반언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당사자가 중재절차 과정에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이를 책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22)</sup> 예를 들면, 중재인 선임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는데 중재인을 선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중재판정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sup>123)</sup>

## 나. 중재판정부 구성 관련 판례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절차중 당사자들의 중재인 선정 절차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이 중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사례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1차 심문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사무국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판정부 앞에서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제1차 심문기일에 중재인을 사무국선정의 중재판정부로 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판시하였다.<sup>124)</sup>

한편,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 중에 당해 중재사건과 사실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사건에서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중재판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sup>125)</sup>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건에서는 “중재법이 정한 기피신청 및 법원에 대

121)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익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김홍규 (1980),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요건과 절차”, 「상사중재연구총서」, 제22집, 대한상사중재원, p.6.

12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판결.

124) 한국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125) 한국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다투어야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새삼스럽게 중재판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중재판정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sup>126)</sup>

#### 다. 중재판정의 이유 기재 누락

현행 중재법하에서 대법원은 중재법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제2항에서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여기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란 ①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②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 ③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또한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sup>127)</sup>

### 5.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정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e호 및 민사집행법 제27조(집행판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판정의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

#### 가.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중재판정이 상급의 중재기관 또는 일반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고, 그 불복에

126) 한국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127) 한국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의하여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면 중재판정의 구속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sup>128)</sup>

그러나 이는 통상의 불복절차에 의한 불복가능성을 뜻할 뿐, 중재판정취소의 소와 같이 특별한 불복절차가 있다고 하여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설은 중재판정이 그에 적용된 절차법에 따라 본안에 관하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거나, 중재규칙에 따라 그 중재기관 내에서 재심사가 허용되거나, 중재합의에서 중재판정 이후의 다른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반면,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경우나 중재판정취소소송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sup>129)</sup>

## 나.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뉴욕협약 규정상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sup>130)</sup> 또는 판정의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전속적 관할이 된다. 여기서 판정의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관할을 갖는 경우란 중재 당사자들이 중재지가 아닌 외국의 중재절차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예외적, 이론적인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정의 기초된 법’이란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뜻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중재인이 적용한 법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sup>131)</sup>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뉴욕협약상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sup>132)</sup> 또한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외국의 재판은 우리 법에 따라 외국재판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재판이 있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한다. 다만,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중재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의 판결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재지국에서 취소된 외국중재판정을 집행지국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133)</sup>

128) 양병희 외 (2006), 「주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p.394.

129) 목영준 (2011), 「상사중재법」, 박영사, p.297.

130) 권한 있는 기관(a competent authority)은 관할법원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1) Albert Jan Van den Berg (1981),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Towards a Uniform Judicial Interpret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p.350.

132) 양병희 외 (2006), 「주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p.395.

중재판정의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법원은 그 중재판정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서 취소 또는 정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판결청구소송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 집행을 요구한 당사자가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sup>134)</sup>

## 6. 중재가능성의 결여와 공서양속 위반

### 가. 중재가능성의 결여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호 및 한국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의 취소) 제2항 제2호 가목 및 중재법 제38조(국내 중재판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그 국가의 법률하에서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중재법 제3조(정의) 제1호는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라고 정의하며, 동조 제2호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중재가능성 판단에서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재법은 공법상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뉴욕협약 역시 원 협약상으로는 ‘계약상의 분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는 뉴욕협약 제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국내법상 상사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만약 상사분쟁(商事紛爭)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뉴욕협약이 적용되기 어렵다.

대체로 중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은 공법상의 분쟁, 가족법상의 분쟁,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증권거래에 관한 분쟁,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분쟁, 노동법상의 분쟁 등이다.

133) 양병희 외 (2006), 「주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p.396.

134) 뉴욕협약 제6조.

우선, 한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의 위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공법상의 분쟁은 중재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적 성격이 있는 분쟁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법상 분쟁해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중재가능성을 무작정 부정하기는 곤란하며,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도 적어도 그것이 분쟁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선결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sup>135)</sup>

## 나. 공서양속 위반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 및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2항 제2호나목,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제3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그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공서양속이 무엇이며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세계적으로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sup>136)</sup> 판례는 외국중재의 집행가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거래안정이라는 국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상사중재판정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위반함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설사 외국중재판정이 한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sup>137)</sup> 그리하여 지금까지 한국 법원에서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된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협약 제5조 제2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contrary to the public policy)”란 한국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보다는 더 엄격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최근의 하급심은 “국제적 공서양속(international public polic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외국중재의 승인 및 집행의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뉴욕협약 도입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135) 김갑유 (2012),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p.334.

136) Albert Jan Van den Berg (1981),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Towards a Uniform Judicial Interpret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p.360.

13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등 다수.

뉴욕협약상의 공서양속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sup>138)</sup>

---

138)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 제4장 외국중재판정 승인과 집행 거부 사례

### 제1절 한국의 사례 분석

#### 1. 중재합의의 무효

서울지방법원 2002.10.24. 선고 2002가합8808에서 원고는 영상프로그램의 제작·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시회의 유치 및 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0. 1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영상프로그램의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BCWW 2001 전시회'의 전시대행용역 일체를 위탁하기로 하는 'BCWW 2001 전시회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1. 1. 9.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BCWW 2001 전시회의 유치 및 대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1조는 분쟁 해결조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약정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고,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으로 해결하며, 당해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갑(원고)이 소재하는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 한다), 피고는 위 분쟁해결조항에 근거하여 2001. 8. 24.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01111-0082호로 중재신청을 하였다.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집행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포기하고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절차가 아닌 사인(私人)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

은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으로 해결하며, 당해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갑(원고)이 소재하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국가법원에 의한 일반적인 재심사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은 중재합의라고 보기 어렵다.<sup>139)</sup>

## 2. 방어권의 침해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판결에서 한국법인인 피고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 런던지점(이하 피고회사라고 함)이 1977.9.18. 영국회사인 지 케이 엔 인터내셔널 트레이닝(런던) 리미티드(이하 원고회사라고 함)로부터 강철봉 240,000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구매조건 및 이 계약의 효력해석 및 이행은 영국법에 의하여 규율되고....이 계약 하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이 계약일 당시의 런던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회사가 위강철봉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는 1980.9.7. 피고회사를 상대로 런던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위 중재법원이 수차 피고회사의 런던지점으로 통지를 보냈으나, 피고회사는 그 이전인 1979.1.5. 사실상 위 런던지점을 폐쇄함으로써 그 통지를 받지 못하여 중재절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중재인은 1981.5.1.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손해금 \$611,165.63, 중재판정일까지의 이자 \$ 208,814.92, 중재판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미국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 및 중재비용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고, 원고회사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한국법원에 제기하였다.<sup>140)</sup>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집행국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침해의 정도가

139) 최성수 (2010),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pp.206~207

140) 이호원 (2003),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仲裁判정의 承認 및 執行: 韓國 大法院 判例를 中心으로”,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p.108.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또 중재당사자의 방어권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3.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 또는 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한국 내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중재판정부는 중재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중재부탁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분쟁을 판정하거나 또는 중재부탁의 범위를 유월하여 판정한 경우 당해 중재판정은 승인 및 거부 될 수 있다.<sup>141)</sup>

중재인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a)의 중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 중재인의 권한에 대한 준거법은 당사자가 지정한 법에 따르되 그것이 없으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에 의하게 된다. 그리고 중재인의 권한유무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이 되는 것은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내지중재부탁 (submission to arbitration)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재인의 권한유무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법원에 귀속될 것이다.<sup>142)</sup>

###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절차상의 하자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35795판결에서 원고는 중국 법인으로서 수산물 수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고, 피고는 냉동·냉장창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인이다. 피고는 1993.7.30. 원고로부터 냉동 대구 610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본 계약을 집행하는 과정 혹은 본 계약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쟁론, 분기는 마땅히 우호적 협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우호적인 협상으로 해결 할 수 없을 때는 마땅히 중재에 의뢰한다.

중재지점은 중국으로서 중재결과는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 모두 약속력이 있

141) 이우영 (199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경성대학교 상경연구」, 제12집, p.191.

142) 최성수 (2010),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法學論叢」, 제22권, 제2호, pp197-222.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1993.8.25. 냉동대구 479.03톤을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운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수하였으나,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실시한 수입식품검사결과 당시 수입제한품목 냉동명태로 전락 판명되어 국내로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 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원고는 1997.7.14. 피고를 상대로 중국 북경에 설치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결과 1998.7.10.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2,387달러를 배상하는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한국법원에 제기하였다.

계약상의 중재조항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뉴욕협약 제2조 소정의 중재합의에 해당하고, 뉴욕협약 제2조에 의하면 같은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중재위원회는 중국에서 외국법인 혹은 자연인과 중국법인 혹은 자연인간의 국제 또는 섭외계약상의 경제무역 등 분쟁을 중재방식에 따라 해결하는 유일한 중재기관이고, 피고는 원고가 1997.7.14. 이 사건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데 대하여 아무런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제출한 자 없이 원고의 중재신청에 응하여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고 원고의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 및 반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협약이 중국 중재법 제18조의 ‘보충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중재협약’에 해당하여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 소정의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인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d) 소정의 집행거부사유인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를 행하는 국가 법령에 합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만약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않기로 하거나 혹은 다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아니한 채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면,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혹은 실효의 원칙<sup>143)</sup>에 비추어

143)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된 경우 새삼스레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서 이러한 실효의 원칙은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한국 대법원에서는 많은 판례(대판 2005. 10. 28 선고 2005다 45827 판결 등)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관례는 한국 대법원이 중재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하지도 않은 채 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경우에는 뉴욕협약의 위 조항을 근거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라 할 수 있다.<sup>144)</sup>

## 5.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취소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관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상대방은 중재판정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전단) 중재판정이 구속력을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재판정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이 구속력을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각국의 중재관련법에서 중재판정의 효력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sup>145)</sup>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후단에서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라 함은 중재판정에 대한 통상의 불복절차(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전단)가 아닌 특별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할 것이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전단과 후단의 차이를 보면 전단의 중재판정에 대한 통상의 불복절차는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도 집행이 거부되나, 후단의 중재판정에 대한 특별한 불복절차는 그 절차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되어야만 집행이 거부된다는 점이다.<sup>146)</sup>

144) 최성수 (2010), "우리나라 관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法學論叢」, 제22권, 제2호, pp212-213.

145) 김상호 (1990), “해사중재판정의 국제적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학회지」, 제1990권, 제11호, p167.

146) 김상호 (1990), “해사중재판정의 국제적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학회지」, 제1990권, 제11호, p168.

## 6. 중재가능성의 결여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내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sup>147)</sup>뉴욕협약 제5조 제2항 (a)호는 중재판정의 대상인 분쟁이 중재집행국의 법질서에 의하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즉 중재에 친하지 아니한 분쟁일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요청받은 중재집행국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의 대상인 주제사항(subject-matter)이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중재부적격사항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sup>148)</sup>이는 중재판정국에서는 중재가 가능한 분쟁일지라도, 중재집행국에서는 중재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sup>149)</sup> 우리나라는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상사유보선언을 하였으므로 형사사건, 비송사건, 강제집행사건, 행정사건 등은 중재부적격에 해당되어 중재집행거부가 될 것이다.

## 7. 공서양속 위반

한국 대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b)호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 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해당 중재 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sup>150)</sup>하였다.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

147) 다만, 대법원 1995.2.14.선고 93다53054판결에서 “중재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법)에 관한 분쟁, 특허권 등 지식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을 들 수가 있으나 한국의 경우 법률상공업소유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을 중재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공업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당연히 중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사분쟁에 대하여는 폭넓게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시창 (2008),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법무연구」, 제12권, 제2호, p.118.

148) 이우영 (199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경성대학교 상경연구」, 제12집, p.191.

149) 유시창 (2008),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법무연구」, 제12권, 제2호, p.118.

150)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 다카 20252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 다 5305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 다 20134 판결.

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당원 1990.4.14. 선고 89다카 20252 판결 참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네덜란드 안틸레스법상 소멸시효기간이 30년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우리나라 법상의 그것보다 길고 또한 한국의 소멸시효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외국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한국의 공서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원고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1978.11.8. 자 노우하우 실시계약에 따라 보유한 권리는 소외 사디회사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중재관할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하여 한국의 공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또한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들은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에게 보낸 편지들로서, 이 사건 기술실시료의 지급을 촉구한 내용에 불과하다), 그밖에 계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점만으로 불공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권리의 행사가 늦었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한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우리나라 공공질서위배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의 공공질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제2절 중국의 사례 분석

### 1. 중재합의의 무효

영국짜넝커투유한회사(嘉能能可有限公司)가 영국런던금속거래서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사례<sup>151)</sup> 중 중재협약이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 이었던가”를 근거로 판정은 승인과 집행이 거절되었다. 최고 인민법원은 “영국짜넝커투유한회사(嘉能能可有限公司) 영국런던금속거래서 중재판정에 대한 회신”에서는 유엔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협약” 제5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인정은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충칭기계설비 수출입 회사 직원 손건과 영국짜넝커투유한회사(嘉能能可有限公司)와 협약체결 시 중국 측 회사는 손건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직인을 찍지 않았다. 이는 대리관계의 성립의 형식요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후 충칭기계설비 수출입회사도 손건의 행위에 대한 부인하였다. 또한 손건의 싸인을 한 행위는 양 회사 과거의 관습과 부합하지 않았다. 표견 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손건이 대표로 싸인 한 중재조항은 무효이고 법률적 결과도 충칭기계설비 수출입회사가 부담할 수 없다. 본 안건이 중재판정은 법에 의거하여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 2. 방어권의 침해

세계해운관리회사가 영국런던 “ABRA 2004년 12월 28일 조약” 중재판결 승인과 집행의 신청한 사례<sup>152)</sup> 중 신청인은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피신청인에게 지정된 중재인과 중재절차를 통지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전자우편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피신청인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항변을 지지하게 되었다.

본 사례에서 세계해운관리회사가 중재를 신청한 후 2005년 2월 22일 소외인을

151) 《最高人民法院关于英国嘉能可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英国伦敦金属交易所仲裁裁决一案请示的复函》([2001]民字他字第2号复函).

152) 《最高人民法院关于是否裁定不予承认和执行英国伦敦“ABRA 2004年12月28日租约”仲裁裁决的请示的复函》([2006]民四他字第34号).

통하여 피신청인인 천진시카이창상무회사(天津市凱強商貿有限公司)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14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정하라고 통지하였다. 2005년 3월 9일 세계해운관리회사 또 다시 소외인을 통하여 천진시카이창상무회사(天津市凱強商貿有限公司)는 최초의 14일 및 다시 준 7일 내에 중재인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N. S. Sevastoponos를 독임 중재인으로 통고하였다. 위 통고에 대해 천진시카이창상무회사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2005년 7월 18일 영국 런던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내렸다. 그 후 천진시카이창상무회사(天津市凱強商貿有限公司)는 신청인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의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통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중국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중재합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였다.

### 3. 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미국 GMI회사가 영국런던금융거래소 중재판결의 승인과 집행 신청한 사례<sup>153)</sup> 중 중재기관은 미국GMI회사와 우후제련공장(芙蓉冶煉廠) 체결한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을 수리한 사례로 미국GMI회사의 신청에 근거하여 GMI회사와 중재합의가 없는 우후제련공장(芙蓉冶煉廠)도 중재 피신청인으로 넣었다. 그러므로 미국GMI회사와 우후제련공장(芙蓉冶煉廠) 및 우후형예그룹유한회사(芙蓉恒鑫銅業集團有限公司) 3자간의 분쟁이라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중재판정의 내용은 피신청인 우후제련공장(芙蓉冶煉廠)은 신청인 미국GMI회사에게 5,725,613.46달러에 이자를 포함하여 한다, 중재비용 8,765.06파운드와 2,500.00파운드 보증금은 피신청인(우후형예그룹유한회사(芙蓉恒鑫銅業集團有限公司)를 지정하여 규정하지 않음, 또는 양자 모두 포함)이 지불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재범위에 대하여 중재기관은 미국 GMI회사와 우후제련공장(芙蓉冶煉廠)간의 매매계약의 분쟁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중재기관이 미국 GMI회사와 무호항흥동업 집단 유한회사간의 판정을 내리는 것은 본 안건의 중재범위를 넘었다고 하였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의 규정에 따라 중재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넘었

153) 《最高人民法院关于美国GMI公司申请承认英国伦敦金属交易所仲裁裁决案的复函》([2003]民四他字第12号).

을 경우 집행이 거부되어야 하지만 중재판정부의 관정권한이 있는 부분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넘는 부분과 분리할 수 있으면 관정권한이 있는 부분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사례는 중재기관이 판정서에 여러 번 피신청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우후제련공장(芙湖治煉廠)인지 우후형예그룹유한회사(芙湖恒鑫銅業集團有限公司)인지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판정서 서두에서 보았을 때 2개의 기업은 모두 피신청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판정 결과로 보았을 때 무호제련공장은 단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승인과 집행을 해야 하고 기타 “피신청인”의 명칭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2개의 기업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민법원에서는 중재판정부에 부탁사항과 부탁하지 않은 사항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였다.

####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절차상의 하자

뽕찌농무싱가폴개인유한회사(邦基農貿新加坡私人有限公司)가 영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신청 사례<sup>154)</sup> 중 중재기관은 중재인을 다시 지정하는 절차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본 안건의 중재협약의 중재절차의 심사는 쌍방 당사자가 약속한 유지거래 대표 인증기관(FOSFA)의 “상속 및 중재규칙”과 영국 1996년 “중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속 및 중재규칙”중 규정에 따라 “본 협회는 중재인 선정하지 않거나 중재인을 대체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며 본 협회에서는 1명의 중재인을 지정하여 준다. 해당 측의 당사자가 본 협회가 통지한 후 14일 이내에 스스로 중재인을 정하면 그러지 아니한다.” 하지만 본 안건은 FOSFA는 피신청인을 위해 지정한 중재인을 회피한 후 피신청인에게 중재인을 대체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직접적으로 새로운 중재인을 지정하였다.

구제적인 상황은 2004년 8월 10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런던 FOSFA에 중재를 요청하고 R.W.ROOKERS를 중재인으로 위임한 동시에 팩스로 피신청인에게 이미 FOSFA에 중재를 요청하였다고 알렸다. 피신청인에게

154) 《最高人民法院关于邦基农贸新加坡私人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仲裁裁决一案的请示复函》([2006] 民四他字第41号).

중재인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하지 않았다. 신청의 신청에 의하여 FOSFA는 2004년 9월 15일에 서한을 보내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정을 요구하였다. 2004년 10월 1일 FOSFA는 피신청인에게 팩스를 보내 S.Bigwood를 중재인으로 지정한다고 통보하였다. 피신청인 2004년 10월 8일, 2004년 10월 11일 두 번에 나누어 FOSFA가 지정한 중재인 지정을 거절하고 중재인의 지정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FOSFA에 의해 거절되었다.

2004년 10월 25일 FOSFA는 사전에 지정한 중재인 S.Bigwood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 W. PLUG를 피신청인의 중재인으로 지정한다고 통지하였다. 2005년 2월 24일, 3월 30일, 5월 11일 FOSFA는 3차례 피신청인에게 팩스를 보내 답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05년 7월 19일 R.W.ROOKERS와 W. PLUG으로 구성된 중재판정을 최종판정을 내렸다. FOSFA는 S.Bigwood가 회피신청 후 중재규칙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대체할 중재인을 선정을 통지하여야지 직접적으로 중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의 규정 된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 한”경우에 해당된다.

## 5.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취소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판정의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집행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뽕찌농무싱가폴개인유한회사 (邦基農貿新加坡私人有限公司) 가 영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신청 사례<sup>155)</sup>에서 피신청인은 해당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규정에 절대로 부합한 것이 아니며 해당 판정문은 아직 발효하지 아니며 이유는 중재판정이 신청인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중국 사법 관행에서 외국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항변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sup>156)</sup>

155) 《最高人民法院关于邦基农贸新加坡私人有限公司申请承认和执行仲裁裁决一案的请示复函》[2006]民四他字第41号.

156) 万鄂湘夏小红 (2010), “中国法院不予承认及执行某些外国仲裁裁决的原因——《纽约公约》相关案例分析”, 「武大国际法评论」, 2010(2), p.22.

## 6. 중재가능성의 결여

모 회사가 몽골국가중재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신청한 사례<sup>157)</sup> 중에 두 명의 중국 공민이 몽골에 유한책임회사 등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 운영 도중에 계약당사자인 한명이 병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아내는 몽골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제기하였다.

요청한 내용은 계약의 종료, 회사등록자본 50%의 소유권 등이다. 그 후 중재기관은 신청인 법정 상속자지위와 그 지위로 인하여 획득하게 되는 투자재산권을 판정하였으나 회사의 지속경영 및 철회 등 상사 분쟁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았다. 법원은 중재판정은 주로 상속항목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렸다. “뉴욕협약”제5조 제2항(a)규정 및 중국”중재법”제3조 상속분쟁은 중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은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였다.

## 7. 공서양속 위반

중국은 과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사유로 공서양속위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외국 당사자들로부터 중국의 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의 신뢰성이 부인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중국최고인민법원은 1995년에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여, 하급심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 거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필히 최고인민법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이후에 거부판결을 내리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하급심 법원과 최고인민법원 간에 공서양속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비교적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하급심법원은 공서양속을 대단히 폭넓게 인정하고 이를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 쉽게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하급심 법원과 최고인민법원 간의 공서양속에 대한 적용기준의 차이는 현재 중국은 공서양속의 적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sup>158)</sup>

157) 《最高人民法院关于不予承认蒙古国家仲裁法庭73/23-06号仲裁裁决的报告的复函》([2009]民四他字第46号).

158) 하현수 (2017), "중국 법원의 상사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 공서양속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pp.291-316.

국제상회중재원 제13464/MS/JB/JEM159)호 중재판정 안건은 범위초과와 공공정책 위반의 상황을 동시에 지닌다. 해당 안건에서 중국 관련 법원이 이미 제남영녕 제약주식회사(濟南永寧制藥股份有限公司 이하 영녕회사)가 제남-해모법모 제약유한회사와(濟南-海慕法姆制藥有限公司 이하 합자회사)간의 임대계약 분쟁에 대해 합자회사의 재산에 대해 보전을 재정하고 판정을 내렸다. 국제상회중재원 다시 해당 임대계약에 분쟁에 대해 심사 및 판정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사법주권과 중국법원의 사법관할권을 침범하였다고 하였다. 해당 사례는 최고인민법원이 공공정책 위반으로 집행과 승인일 거부한 유일한 외국사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양한 사안을 통해 다음 원칙을 확립했다. 첫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적 공익의 시대성과 발전성을 반영하여 공공정책위반조항을 분석, 적용한다. 둘째, 공공정책위반조항은 엄격하게 제한 적용한다. 중국 중재법과 중국 민사소송법에 있는 “사회공공이익” 즉 공서양속에서 도덕규범이나 기본법률, 사회이익, 근본적 공익이라 해석되는데, 이는 공공정책과 다른 개념으로 법원은 공공정책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중국 법원이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해석하면 국제적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sup>160)</sup>

### 제3절 소결

#### 1. 한국의 판례

전술한 바와 같이 뉴욕협약 제5조에서 들고 있는 집행거부사유는 당사자 증명사유로 ① 행위능력의 결여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② 방어권의 침해, ③ 중재인의 권한유월,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 ⑤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취소·정지된 중재판정, 법원 직권사항으로 ① 중재가능성, ② 공공질서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한국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한국 법원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되도록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159) 《最高人民法院关于不予承认和执行国际商会仲裁院仲裁裁决的请示的复函》([2008]民四他字第11号).

160) 马德才 (2010), “《纽约公约》中的公共政策性质之辨”, 「法学杂志」, 2010(4), p.72.

그리고 판례가 가장 많은 분야가 공공질서 판단 부분이다. 이 부분에 관한 한국 판례의 태도는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공서의 위반, 즉 국내법질서를 혼란시킬 정도로 정의 관념에 반하는 심각한 공서의 위반의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공질서를 제외한 사유들은 비교적 국가정책이 반영될 여지보다는 법원의 균형감 있는 법적 판단이 더 큰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중재제도의 인정 취지가 무엇인지를 천착하여 관련법의 형식적 해석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재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는지 등 큰 줄거리에서 파악하여 판단하는 태도가 바람직 할 것이다.<sup>161)</sup>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서의 “집행국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한국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편협한 국내적 공공질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 개방된 국제적 공공질서의 기준에 맞추어서 공공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함을 의미한다. 즉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거부사유로서 국내공서만을 적용하지 않고 적어도 국제적 공서개념을 고려하는 데에 일관하고 있다.<sup>162)</sup>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을 설정함에 필요한 나름의 내부적 기준을 상정하여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적 설정기준의 방향은 개방적이어야 함이 상당하다. 중재는 자율적 분쟁해결방식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법원은 참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재제도 자체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도록 하는 배려가 요청된다.<sup>163)</sup>

161) 최성수 (2010),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법학농촌」, 제22권, 제2호, pp225.

162) 최성수 (2010),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법학농촌」, 제22권, 제2호, pp225.

163) 최성수 (2010),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法學論叢」, 제22권, 제2호, pp.224-225.

## 2. 중국의 판례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을 받은 중급인민법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최종적인 승인·집행의 거부가 최고인민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하급심법원의 뉴욕협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나 자의적인 판단을 통제하고, 동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신청의 기간준수여부에 관한 유연한 해석이라든지, 뉴욕협약 상‘공서’에 관한 제한적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중국 내에서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판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외국중재판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방보호주의로 인해 중재판정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는 주로 CMAC 와 CIETAC가 담당했으나 1994년 중재법 개정 이후 지방중재위원회에서도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되었다. 중재기관들은 운영비 부족으로 중재기관 소재지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중재위원회의 지방정부에 간섭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중앙집권화 경향에서 점차 지방분권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법관의 전문성 결여로 중재판정 집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1990년 중반까지는 법관이 되는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현재 법관들 중에서는 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법관들과 전문성이 결여된 법관들로 인해 여러사건에서 뉴욕협약의 조항이나 집행규칙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전보고제도하에서도 외국중재판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뉴욕협약에서는 중재판정과 집행에 있어서 시간제약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국내 관할 법원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국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결정을 신청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사항에 대해 명령을 내려야 하고 명령을 내린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정을 집행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전보고제도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는데 기한을 명시하

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간이 많이 소모할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4)</sup>

따라서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사이의 집행신청기간 기산점에 대한 불일치 문제라든지, 비 국내판정에 관한 중재법조항의 흠결 문제 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에 대한 손질은 필요한 상태라고 할 것이지만, 중국 측 당사자와 거래를 하는 한국 측 당사자로서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법원의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국 내에서의 승인·집행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포함시키고, 계약과 중재규칙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통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sup>165)</sup>

---

164) 정용균 (2010),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pp152-153.

165) 정태혁 (2014), "외국법원의 재판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중국법원의 판례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p.130-131.

## 제5장 결 론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이후 양국간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국제교역량 또한 급속히 증가하였다. 한·중 양국의 무역거래가 확대함에 따라 중재는 양국이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중재의 탄력성, 신속성, 저렴한 비용 등 장점은 상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국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수장으로 양국의 무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에 기초하여 한국과 중국의 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한·중 양국 상사중재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중재인의 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중재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은 1인이나 3인의 중재인으로 하고 있으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3인으로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 누구나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중대기구가 제시한 중재인명부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의 경우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심리종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중재판정부 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한국은 한국 법원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되도록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판례가 가장 많은 분야가 공공질서 판단 부분이다. 국내법 질서를 혼란시킬 정도로 정의 관념에 반하는 심각한 공서의 위반의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공질서를 제외한 국내사유들은 비교적 국가정책이 반영되지만 국내법원의 균형감 있는 법적 판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거부사유로서 국내공서만을 적용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서개념을 고려하는 데에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거래가 비번하고 또한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국내법규와 국제 현실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국제현실을 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거

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의 사법주권의 침해가 된다면 그 승인·집행을 거절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공서위반은 공서라는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남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 공서양속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중국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 중국의 공서양속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국외공서양속과 국내공서양속을 구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외국중재판정의 사법심사를 하면서는 국제공서양속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하급심 법원들은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공서양속을 적절하지 않게 적용하였다는 점도 본문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국내논문》

- 김석민 (2018), 「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두남, p.69.
- 김태훈·차경자 (2012),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역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6.
- 김갑유 (2012),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 김광수(2007),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 논문, p.10.
- 김경배 (2005),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p.309.
- 김홍규 (1980),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요건과 절차”, 「상사중재연구총서」, 제22집, 대한상사중재원, p.6.
- 김상호 (1990), “해사중재판정의 국제적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학학회지」, 제1990권, 제11호.
- 강수미 (2006), “중재합의의 성립에 효력에 관한 준거법”,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 노태약 (2010),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국제사법학회, p.114.
- 대한상사중재원 (1996), 「상사중재 30년사」, p.58.
- 목영준 (2011), 「상사중재법」, 박영사.
- 신두식·이주원 (2012), 「국제무역클레임과 중재실무」, 두남출판사, P.58.
- 신군재·김경배 (2004), “중국기업과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p.58.
- 석광현 (2007),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서울: 박영사, p.248.
- 서정일 (2003), 「국제상사중재법론」, 도서출판두남, p.172.
- 이정 (2015),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이정·박성호 (2017),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2호.
- 양병희 외 (2006), 「주식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 p.394.

- 이호원 (2003),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韓國 大法院 判例를 中心으로”,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p.108.
- 이우영 (199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경성대학교 상경연구」, 제12집.
- 이태영(2008), “중재합의의 법적 구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p.22.
- 양효령 (2019),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운영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 (試行)에 관한 고찰”, 「東北亞法研究」, 제12권, 제3호 pp.29-58.
- 유시창 (2008),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법무연구」, 제12권, 제2호, P118.
- 정용균 (2010), “중국에서의 상사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동향과 제도개선 연구: 외국투자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1호, pp152-153.
- 정태혁 (2014), “외국법원의 재판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중국법원의 판례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p. 130-131.
- 최성수 (2010),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法學論叢」, 제22권, 제2호, pp.224-225.
- 홍재성·신범수 (2015) “중국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 상해자유무역지역의 신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통권 42호, 한국 무역연구원, pp.323-337.
- 하현수 (2017), “중국 법원의 상사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 공서양속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pp.291-316.
- 한나희·육영춘·이갑수(2019), “중국 상사중재에서 CISG의 적용에 관한 연구 - CIETAC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p.68.
- 황병준(2018), “중국 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에 관한 연구: 외국중재판정 거부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p.68.
- 쑤쇼링(2013), “중국법원에서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pp.489-521
- Altansuvd, Luvsandorj(2018), “한국과 몽골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pp.15.

## 《해 의 논문》

- Albert Jan Van den Berg (1981),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Towards a Uniform Judicial Interpret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p.350.
- Gary B. Born (2009),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 Keechang Kim (2008), “Arbitration Agreement under Korean Law,”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 3, p.83.
- René David (1985),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cations, p.143.
- 万鄂湘·夏小紅 (2010), “中國法院不予承認及執行某些外國仲裁裁決的原因——《紐約公約》相關案例分析”, 「武大國際法評論」, 2010(2), p.22.
- 張慶元·陸薇 (2010), “國際商事仲裁中的國籍問題”, 「仲裁研究」, 2010(2), p.2.
- 馬德才 (2010), “《紐約公約》中的公共政策性質之辨”, 「法學雜誌」, 2010(4), p.72.